

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

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개정사유

- 가. 「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,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,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수집·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함
(안 제3조)
- 나.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를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간정보"란 지상·지하·수상·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2. "공간정보체계"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.
3. "공간정보참조체계"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.
4. "관리기관"이란 공간정보를 생산·관리하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, 군·구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·공단을 말한다.

5. “유관기관”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.
6. “정보이용자”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) ① 관리기관은 수집·생산하는 공간정보를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·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간정보협의회)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공간정보의 제공)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,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

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제6조(수수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제7조(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) 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- 제8조(보안관리) 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간정보제공 종류와 수수료(제6조제2항, 제7조제1항 관련)

종 류	금 액	비 고
출력도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」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·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	※ CD 등 저장 매체는 사용자가 부담
수치지도 벡터데이터 (1:1000 축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	

[별표 2]

공간정보제공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율(제7조제2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(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관련) ○ 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○ 상·하수도, 전기, 가스, 통신, 송유관, 지역난방 등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구축에 제공되는 경우 	100(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·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○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순수 학술연구,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(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관련) 	50(%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민 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, 재해예방,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	25(%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3조(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) ○ 제14조(공간정보 표준화) ○ 제21조(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) ○ 제24조(협력체계 구축) ○ 제27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○ 제28조(보안관리) 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6조(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) ○ 제23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□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6조(지도등의 판매가격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

제13조(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·도로·하천·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.

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정보참조체계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·대상·유지 및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공간정보 표준화)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과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.

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·관리·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(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·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·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24조(협력체계 구축)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·관리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27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과 제28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□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6조(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)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,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)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
2.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
□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6조(지도등의 판매가격)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치지도(數値地圖)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도엽(圖葉)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
2.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

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축척
3. 규격
4. 단위
5. 판매가격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